

회계사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서

2023.07.15 기준

문 1) 『회계사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배상청구기준)이란 무엇입니까?

- ▶ 피보험자인 회계사의 전문업무 수행상의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 3 자에게 직접적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사고처리에 드는 제반 비용을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 ※ 피보험자 범위: 기명 피보험자와 그 임직원(기타 약관에 따름)
 - ※ 업무과실 따른 직접손해만 보상. 간접손해/결과적 손해 부보장(기타 약관에 따름)

> 손해배상 소송 시 보험회사에 통지 필수

이 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소송 방어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비용, 기타 비용) 단, <u>피해자로부터 소송이 있는 경우 반드시 먼저 보험회사에 통보가되어야 합니다.</u> 이때 피보험자는 소송위임장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회사가소송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고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할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등은 대법원규칙에 권고된 변호사 보수표를 기준으로하며 일부 가감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2)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법률적 손해배상금: 판결액, 최종합의 및 화해액
 단, 징벌적 손해, 벌과금, 과태료 등과 서비스 수수료 반환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고처리 제비용: 보험사에 의해 지정된 변호비용과 보험사에 의해 지급되거나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하에 지급한 피보험자의 기타비용으로서 조사, 방어, 합의 등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등

문 3) 『사고공동부담비율 (Co-Insurance Clause)』이란 무엇입니까?

▶ 2010 년 이후 증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동보험 조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조건은 보험사고 접수 후 확정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내용으로 피보험자는 Case S조건은 0%, Case A조건은 10%, Case B 조건은 20%를 부담하고 그 차액을 보상받습니다. [문 6] 번의 사례 참조]



문 4) 보험가입 전 업무의 담보여부 및『고지의무』

▶ 이 보험은 보험가입 전의 업무로 발생한 사고나 가입 당시 이미 발생한 사고, 손해배상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원인에 기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 5) 보험가입 후 알릴 사항 및『통지의무』

▶ 보험가입 후 피해자 또는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배상 청구는 없었지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상황통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의 통보가 늦는 경우 또는 보험기간 내에 통보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 6) 『배상청구기준증권』과 『소급담보일』이란 무엇입니까?

- ▶ 『배상청구기준증권』이란 현재 유효한 보험증권의 보험 기간 중에 소급담보일 이후 사고로 제3자(의뢰인 포함)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청구가 보상되는 증권입니다. 즉, 가입 증권(증명서)에 기재된 소급담보일 (RETROACTIVE DATE) 이후의 업무에 기인한 사고로 보험종료일 사이에 발생된 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며,『소급담보일』이란 통상 최초 보험가입 일을 의미합니다.
- ▶ 따라서 매년 갱신이 이루어 질 경우 소급담보일 이후의 업무가 계속 담보되지만 이때의 보상기준은 업무일이 속한 보험증권 가입조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배상 청구 당시의 유효한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보상 됩니다.(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문 3,6 에 따른 보상 예)

2020.8.1 계약 시: Case B 조건, 보상한도 5천만원 / 자기부담금 1천만원2023.7.15 갱신 시: Case B 조건, 보상한도 5천만원 / 자기부담금 3백만원상기 가정하에 2020년 10월에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어 2천만원의배상청구가 2023년 9월 1일에 발생된 경우: 청구시점 기준인 2023년도조건에 따라 손해액 2천만원에서 자기부담금 3백만원을 공제한 1,700 만원중 피보험자의 부담비율 20%인 340만원을 제외한 1,360 만원이 지급됨.



문 7)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 8)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 ▶ 『보상한도액』이란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상한선을 뜻하며 보상한도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 집니다.
- ▶ 『자기부담금』이란 공제금액이라고도 하며 자기부담금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피보 험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며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체 손해액 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됩니다. (사고공동부담비율 선 택 가입한 경우 추가 공제 후 지급)

문 9)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A. 타인의 상해, 질병 또는 사망이나 신체손해 및 유체물의 손실 또는 물적 손괴를 원 인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
- B.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조직, 회사 등의 임직원 및 파트너의 지위로서 행한 업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C. 보험개시일 이전에 행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다른 보험으로 담보 받을 수 있는 경우나 피보험자가 동 과실이 배상청구의 원인이 될 것을 인지하였거나 인지 가능 한 손해배상청구
- D. 피보험자의 부정직, 사기, 범죄 위법행위나 악의에 기인한 경우
- E. 피보험자가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F. 신의성실에 위배되거나 법령의 악의적 위반으로 피보험자에 의해 행해진 중상, 비방 및 명예훼손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G.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H. 타법인에 대한 회계사로서의 업무 수행 중 유가증권, 부동산 및 기타투자 관련한 자문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I.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수수료 수임이 금지된 타 법인을 위해 업무 수행한 것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J. 특정 유가증권의 판매 및 홍보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 K.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을 위해 업무 수행한 경우 이에 기인한 배상책임
- L.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 (계약상 가중책임 등)

※ 피보험자 및 피용인의 고의 등 행위 부담보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of Policy Wording, any claims arising out of any intentional, malicious, criminal or illegal act by the Insured or his employees shall not be covered (보험약관상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 피용인의 의도적, 악의적, 범죄적 행위로 인한 청구는 보상하지 않음)

문 10) 계약상 가중책임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법률상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만을 말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상 타인의 배상책임을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 이를 법률규정상의 배상책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계약상의 가중책임이라고 합니다.

문 11) 사고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사고 예상시 보험사에 즉시 서면통보)

▶ 피해자 또는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배상청구는 없었지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록톤코리아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 며, 즉시 보험사에 서면에 의한 사고접수를 하여야 합니다(피보험자는 상황통지 의 무가 있으므로 상기 사실의 통보가 늦는 경우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에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접수된 경우 록톤코리아는 보험회사에 즉시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접수 후 손해사정인을 선임하거나 자체적으로 사고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고조사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약 3~4 주가 소요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보고서가 작성되고 보험회사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정산하여 피보험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록톤코리아는 협상권을 가진 보험중개사로서 계약자를 대변하여 보험계약 내용의 해석 및 약관 적용에 조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 12) 보험사고 조사 시 감사반연합회 소속 회계사 참여

▶ 회계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접수된 경우 감사반연합회 소속 회계사가 참여하여 사고 조사·심사,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문 13) 록톤코리아(LOCKTON KOREA)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록톤코리아는 보험회사와는 별도의 독립 단체인 보험중개사로 고객의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권유 또는 주선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체결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계약자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고 발생시 사고 통보로부터 보험금 수령에 이르기 까지의 제반 업무를 지원합니다.(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운영)
-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상품안내이며 회계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과 보상은 청약서상의 보험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 * 이 보험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번역본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약관은 록톤코리아 '전문인보험 가입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 로그인 > 알림마당 > 자료실 또는 한국공인회계사 감사반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회계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록톤코리아 '전문인보험 가입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ocktonpi.com)에서 진행되니 회원가입, 로그인 후 이용 바랍니다.
- * 신규 가입 원하시는 회계사는 회계사등록증을 먼저 록톤으로 보내 회계사 회원 확인 후 가입 진행되니 회계사등록증을 팩스 송부 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u>회계법인 소속 회계</u>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문의 및 상담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전문인보험팀 <u>https://www.locktonpi.com</u>	이순옥 상무 윤 원 이사 윤자영 부장 박순정 과장 이윤아 주임	TEL : 02)2011-0300 FAX : 0503-8379-2008
--------------	--	--	--